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

제출년월일 : 2009. 3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1979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·보강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현 시설을 매각하고 교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부지를 매입 신축 이전하여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- 현재 추진중인 인동동 청사 예정부지는 실제 임야로서 활용도가 낮으며,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□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

- 토 지 : 7,000m²
- 기준가격 : 2,345,000천원(분양가 기준)

□ 인동동 청사 추가 확보 신축 부지

- 토 지 : 20,000m²
- 기준가격 : 1,508,450천원(가감정액)

【 처분재산 】

□ 현비둘기아파트

- 토 지 : 1필지 11,565m²
- 건 물 : 6,094m²
- 기준가격 : 9,777,444천원(가감정액)

3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1조, 제12조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[illegible]

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천원)

[illegible]

2009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[illegibl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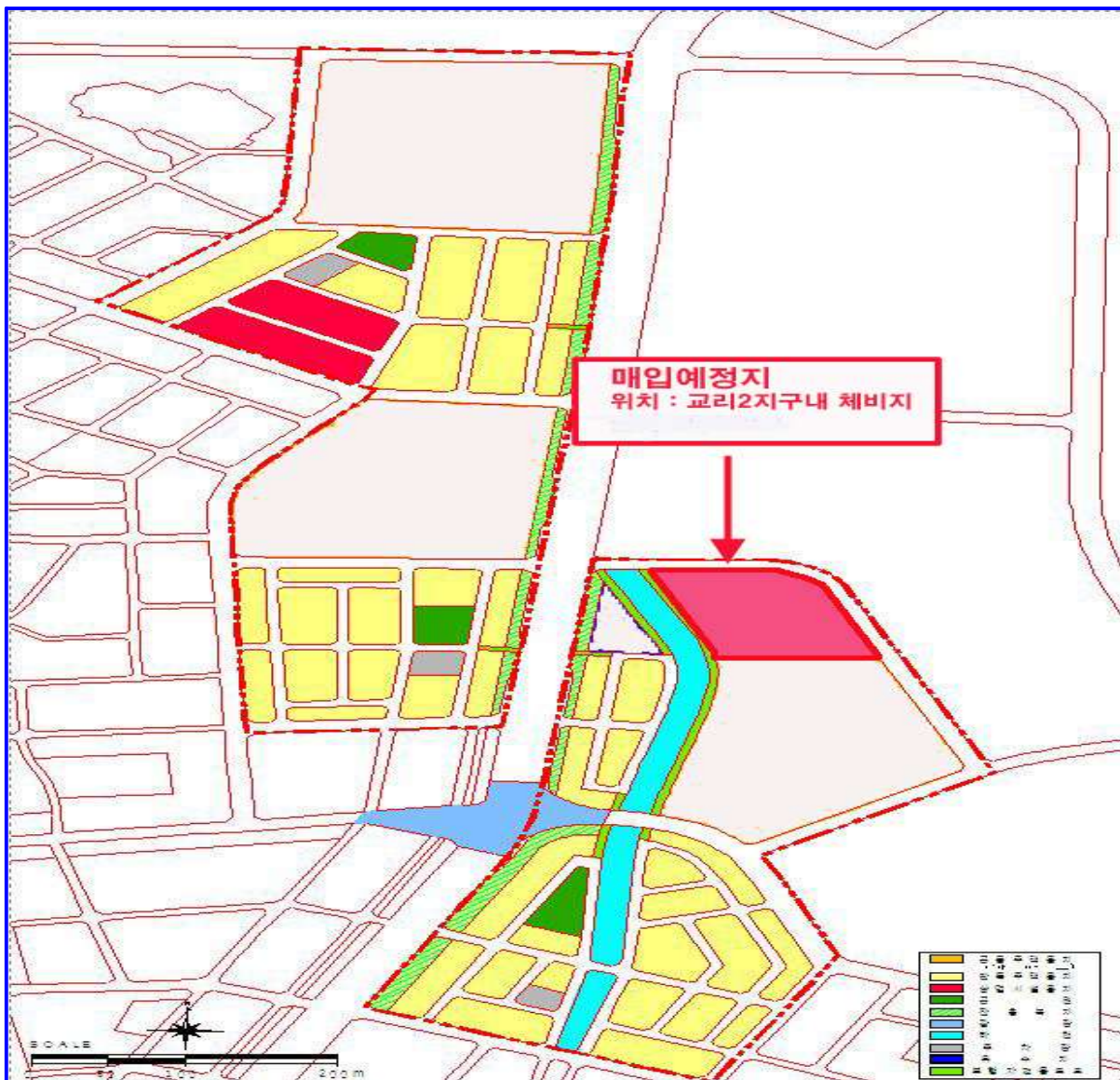
취득대상토지

□ 재산의 표시 :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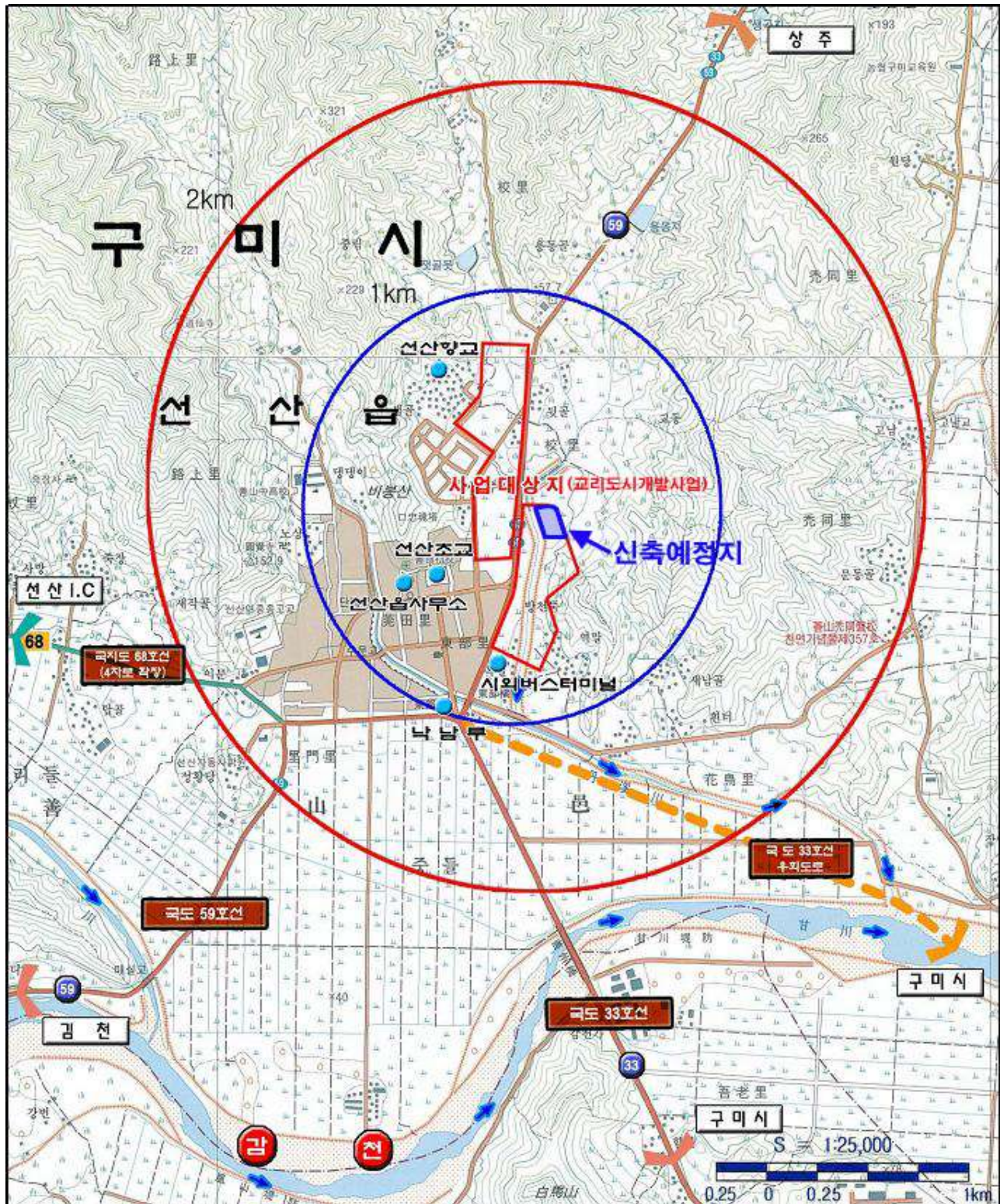
○ 소재지 : 구미 교리2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

○ 지목 및 면적 : 대지(7,000m²)

□ 지 적 도



□ 위 치 도



취 득 대 상 토 지

□ 재산의 표시 : 인의동 청사 추가 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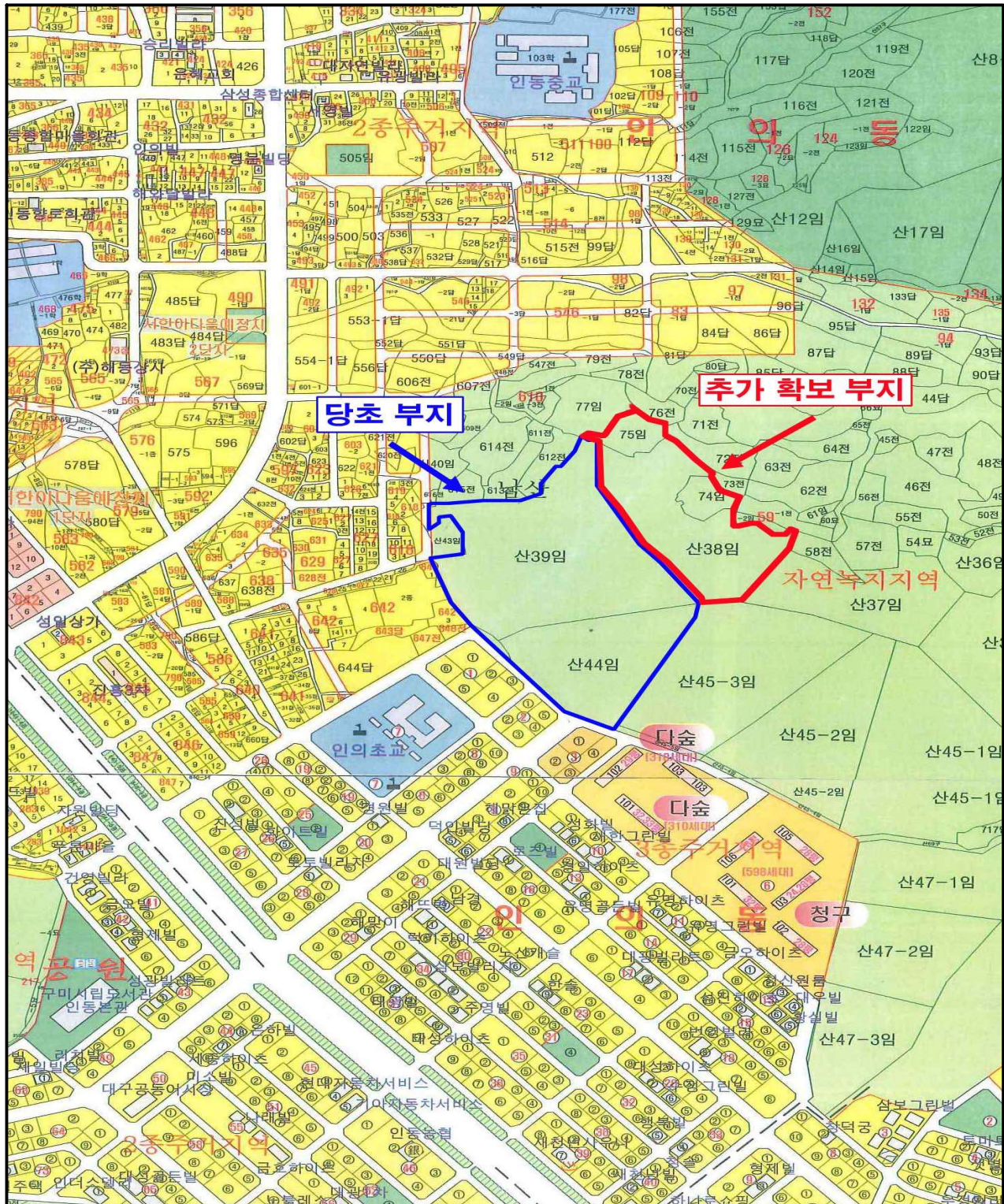
○ 소재지 : 인의동 산38번지의외 2필지

○ 지목 및 면적 : 임야(20,000㎡)

□ 지 적 도



□ 위치도



처 분 대 상 토 지

□ 재산의 표시 : 현 비둘기아파트

○ 소재지 : 구미시 형곡동 65번지

○ 지목 및 면적 : 대지(11,565㎡)

□ 지 적 도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<생략>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

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)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인 재산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

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3. 행정·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
4. 잡종재산의 용도변경
5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(사용·대부로 및 매각대금의 사용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
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
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
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
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